

1. 기본방역수칙, 개인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의 의미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
 - ※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 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 준수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 (위반)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밀폐·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r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수칙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2. 사업장 방역수칙

사업장 방역수칙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1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설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냉장시설 가동 (※유기공압체 등)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사업장·흡연실·휴게실 등)	이용자간 항상 2m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좌석간 2m유지 또는 칸막이설치		좌석간 2m 유지 불가	
(균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10명 미만	1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일반 사무공간)	적극적 침방울 발생(여론조사 기관, 콜센터 등)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유증상자 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있음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참고 사항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 이상)

<표2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결과 (해당에 V표시)	
	예	아니오
①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② 매일 직원(일용직포함)의 체온측정 및 증상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③ 근무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가?		
④ 직원 외 방문자의 출입명부 관리를 하는가?		
⑤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 가동을 하는가?		
⑦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해당사업장만)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를 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개선 및 참고 사항